##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6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오세희·조 국·박지원

김태선 · 복기왕 · 이재관

장철민 · 김원이 · 양부남

박지혜 · 정준호 · 송재봉

허성무 · 강준현 · 박수현

위성락 • 임호선 • 박희승

정진욱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 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법률 제 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 인시장진흥기금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 사업 금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권수익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 정은 2025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	①
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	
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	
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u>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u>
	<u>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